

2016년 곡성군 재정공시(예산)

곡성군 재정공시 제55호(2016.2.29.)

곡 성 군 수



- ◆ 우리 곡성군의 '16년도 살림규모(세입예산)는 2,877억원으로, 전년 예산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, 동종단체 평균액 2,874억원보다 3억원이 많습니다.
 - 자체수입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은 205억원, 의존재원(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)은 2,304억원,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30억원입니다.
- ◆ 우리 군의 '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'재정자립도'는 7.48%이며,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'재정자주도'는 56.5%입니다.
- ◆ 우리 군의 '16년 당초예산(일반회계+특별회계+기금) 기준 통합재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는 2억원의 흑자입니다.
- ◆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,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높아 재정자립도 등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되고 있으나, 불요불급한 분야의 재정지출 절감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◎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(www.gokseong.go.kr)에서 보실 수 있으며,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자 : 기획실 권은주(360-8412)

1 공통공시 총괄

☐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재정운영 결과		곡성군			유사단체 평균		
		'16년도 (A)	'15년도 (B)	증감 (C=A-B)	'16년도 (A)	'15년도 (B)	증감 (C=A-B)
예산규모	세 입 예 산	2,877	2,932	△55	2,874	2,777	98
	세 출 예 산	2,877	2,932	△55	2,874	2,777	98
	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재정여건	재정자립도[당초]	12.7	10.52	2.18	13.91	12.93	0.98
	재정자주도[당초]	61.42	61	0.42	64.4	64.69	△0.29
	통합재정수지[당초]	2	-	2	7	23	△16
재정운영계획	성 인 지 예 산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주 민 참 여 예 산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성 과 계 획 서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	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	항목별 공시내용 참조					

2 예산규모

2-1. 세입예산

-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. 2016년도 곡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세입예산 총계	일반회계	공기업 특별회계	기타 특별회계	기금
287,698	263,979	-	19,202	4,518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연도별 세입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2012	2013	2014	2015	2016
238,360	267,699	273,952	293,193	287,698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입재원	2012		2013		2014		2015		2016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
합 계	219,753	100%	244,572	100%	248,621	100%	259,705	100%	263,979	100%
지방세	9,300	4.23%	9,450	3.86%	9,580	3.85%	10,100	3.89%	11,000	4.17%
세외수입	11,946	5.44%	11,671	4.77%	7,525	3.03%	9,223	3.55%	9,532	3.61%
지방교부세	115,584	52.60%	130,781	53.47%	131,667	52.96%	129,770	49.97%	127,277	48.21%
조정교부금 등	1,169	0.53%	1,335	0.55%	1,335	0.54%	1,335	0.51%	1,335	0.51%
보조금	81,754	37.20%	91,335	37.34%	92,712	37.29%	101,275	39.00%	101,834	38.58%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-	-	-	-	5,802	2.33%	8,002	3.08%	13,001	4.92%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2-2. 세출예산

- 1년 동안 곡성군에서 사회복지, 보건, 문화관광,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세출 총계	일반회계	공기업 특별회계	기타 특별회계	기금
287,698	263,979	-	19,202	4,518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12	2013	2014	2015	2016
238,360	267,699	273,952	293,193	287,698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❖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분야	2012		2013		2014		2015		2016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
합 계	219,753	100%	244,572	100%	248,621	100%	259,705	100%	263,979	100%
일 반 공 공 행 정	11,960	5.44%	15,061	6.16%	16,619	6.68%	13,694	5.27%	15,094	5.72%
공공질서 및 안전	11,169	5.08%	6,678	2.73%	9,177	3.69%	9,106	3.51%	10,978	4.16%
교 육	1,640	0.75%	1,414	0.58%	1,270	0.51%	1,894	0.73%	1,323	0.50%
문 화 및 관 광	22,588	10.28%	25,321	10.35%	20,230	8.14%	17,866	6.88%	17,039	6.45%
환 경 보 호	11,415	5.19%	20,113	8.22%	16,568	6.66%	23,720	9.13%	16,200	6.14%
사 회 복 지	32,359	14.73%	36,331	14.85%	43,754	17.60%	49,599	19.10%	49,436	18.73%
보 건	3,923	1.79%	3,595	1.47%	5,532	2.23%	5,332	2.05%	4,453	1.69%
농 립 해 양 수 산	56,600	25.76%	54,343	22.22%	53,997	21.72%	53,584	20.63%	56,167	21.28%
산 업 · 중 소 기 업	3,035	1.38%	3,812	1.56%	1,900	0.76%	1,722	0.66%	2,345	0.89%
수 송 및 교 통	5,331	2.43%	5,744	2.35%	6,019	2.42%	7,186	2.77%	6,947	2.63%
국 토 및 지 역 개 발	14,154	6.44%	23,517	9.62%	21,204	8.53%	19,623	7.56%	27,949	10.59%
과 학 기 술	152	0.07%	65	0.03%	52	0.02%	84	0.03%	99	0.04%
예 비 비	3,202	1.46%	3,266	1.34%	2,823	1.14%	3,550	1.37%	2,960	1.12%
기 타	42,225	19.21%	45,313	18.53%	49,476	19.90%	52,745	20.31%	52,988	20.07%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
2-3. 중기지방재정계획

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❖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6	2017	2018	2019	2020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356,642	358,826	366,002	372,095	382,231	1,835,796	1.70%
자 체 수 입	27,188	27,765	28,356	28,980	29,577	141,866	2.10%
의 존 수 입	290,301	296,241	303,826	310,138	320,225	1,520,731	2.50%
지 방 채	9,296	6,851	5,049	3,721	2,743	27,660	△26.30%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29,858	27,969	28,770	29,256	29,685	145,538	△0.10%
세 출	356,642	358,826	366,002	372,095	382,231	1,835,796	1.70%
경 상 지 출	60,093	60,334	64,351	66,644	68,883	320,305	3.50%
사 업 수 요	296,549	298,492	301,651	305,451	313,348	1,515,491	1.40%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▶ 연평균 증가율 = $[(\text{최종연도}/\text{기준년도})^{1/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 - 1] \times 100$

2-4. 지역통합재정통계

- ▣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 포함), 기금,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.
다음은 곡성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당초예산 (A)	2016년 예산 (B)	증감액 (B -A)	비율 (B-A)/A
합 계	293,081	286,798	△6,283	△2.14
곡성군	293,081	286,798	△6,283	△2.19
공사·공단	-	-	-	-
출자·출연기관	-	-	-	-

- ▶ 당초예산 총계기준
- 2016년 곡성군 예산 : 283,101백만원(일반+특별회계) + 4,518백만원(기금)
- ▶ 공사·공단 : 없음
- ▶ 출자출연기관 : 없음

3 재정여건

3-1. 재정자립도[당초]

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재정자립도가 100%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. 2016년도 곡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.78%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재정자립도 (B/A)	세입 합계 (A=B+C+D+E)	자체세입 (B)	의존재원 (C)	지방채 (D)	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(E)
개편 후	7.78%	263,979	20,532	230,446	-	13,001
개편 전	12.70%	263,979	33,533	230,446	-	-

- ▶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, 개편 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, 이월금, 전입금, 예탁·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수치이며 개편 전은 세입과목 개편 전으로 계산한 수치임
- ▶ 자체세입 : 지방세(지방교육세 제외) + 세외수입
- ▶ 의존재원 : 지방교부세 + 조정교부금 등 + 보조금

❖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%)

구분	2012	2013	2014	2015	2016
당초예산	9.67%	8.64%	6.88% (9.21%)	7.44% (10.52%)	7.78% (12.70%)
최종예산	12.35%	12.11%	6.83% (14.45%)	7.58% (21.46%)	-

※ ()는 세입과목 개편 전으로 계산한 재정자립도 수치임

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



우리군은 자체세입에 비해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, 재정자립도가 7.78%이나,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원은 줄어들고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의존재원의 규모도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나, 자체세입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 유사단체보다는 높음.

3-2. 재정자주도[당초]

☐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. 재정자주도가 100%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곡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.5%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재정자주도 (B/A)	세입 합계 (A=B+C+D+E)	자주재원 (B)	보조금 (C)	지방채 (D)	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(E)
개편 후	56.5%	263,979	149,144	101,834	-	13,001
개편 전	61.42%	263,979	162,145	101,834	-	-

- ▶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, ()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, 이월금, 전입금, 예탁·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.
- ▶ 자주재원 : 자체세입 + 지방교부세 + 조정교부금 등

❖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%)

구분	2012	2013	2014	2015	2016
당초예산	62.80%	62.66%	(30.38%) 62.71%	(57.92%) 61.00%	(56.5%) 61.42%
최종예산	65.21%	63.52%	(56.53%) 63.17%	(51.04%) 64.92%	0.00%

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



☐ 우리군의 세입 중 자주재원이 지방세 4.17%, 세외수입 3.61%, 지방교부세 48.21%, 재정보전금 0.51%으로 총 56.5%를 차지하는 반면, 보조금이 예산의 38.58%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유사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

3-3. 통합재정수지

☐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,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. 다음은 2016년 곡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별	통계 규모						통합재정 규모 (G=B+E)	통합재정 수지 1 H=A-(B+E)	통합재정 수지 2 I=A-(B+E) +F
	세입 (A)	지출 (B)	융자 회수 (C)	융자 지출 (D)	순융자 (E=D-C)	순세계 잉여금 (F)			
총 계	260,600	278,065	1,638	1,701	63	17,728	278,128	△17,529	200
일반회계	250,978	258,625	-	-	-	13,000	258,625	△7,647	5,353
기타 특별회계	9,528	17,499	1,638	1,701	63	4,728	17,563	△8,035	△3,307
공기업 특별회계	-	-	-	-	-	-	-	-	-
기 금	94	1,941	-	-	-	-	1,941	△1,847	△1,847

- ▶ 당초예산 총계 기준
- ▶ 통합재정규모 = 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) + 순융자(융자지출-융자회수)
- ▶ 통합재정수지 1 = 세입 - (지출 + 순융자)
- ▶ 통합재정수지 2 = 세입 - (지출 + 순융자) + 순세계잉여금

❖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
통합재정수지 1	△7,408	△6,452	△7,387	△11,929	△17,529
통합재정수지 2	△105	△96	△72	7	200

☞ 2016년 통합재정규모는 278,128백만원으로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여 17,529백만원이 적자이며,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는 세입규모가 커지게 되어 적자폭이 줄어들어 오히려 200백만원 흑자입니다.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곡성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61	15,442
여성정책추진사업	11	782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37	13,364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13	1,296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곡성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287,698	6,749	모델 1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❖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6,749	
안전건설과	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	200	
안전건설과	농로보수 공사	1	
민원과	버스 환경 개선 및 군내버스 활성화	286	
농정과	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물 집중 육성	294	
환경과	오산면 오수처리 시설	3,000	
복지실	마을회관의 주방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 요망	330	
경제과	채래시장 활성화	460	
산림과	산림관광자원 개발사업	1,082	
민원과	읍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작업 및 예산 반영	3	
환경과	입면 마을 상하수시설 확충	500	
민원과	관내 시내권 주차장 확보사업	433	
산림과	장미 식재 사업	160	

4-3. 성과계획서

- 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☐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곡성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성과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합계	24	96	254	238	283,181	277,592	5,589
기획실	1	1	4	2	5,410	5,873	△463
복지실	1	5	12	9	51,993	52,359	△366
행정과	1	9	27	26	20,381	20,780	△399
재무과	1	10	26	16	32,857	32,491	366
민원과	1	2	6	6	5,120	4,146	974
관광과	1	3	9	10	12,676	13,834	△1,158
문화과	1	4	9	9	8,921	7,652	1,270
환경과	1	8	18	14	27,878	34,884	△7,005
안전건설과	1	6	17	26	40,708	34,723	5,985
경제과	1	8	25	18	7,207	3,559	3,648
산림과	1	7	16	17	12,885	8,469	4,416
농정과	1	3	9	11	31,746	31,265	481
기술과	1	7	17	13	4,306	3,697	609
유통축산과	1	6	14	18	8,979	11,559	△2,579
보건과	1	5	12	17	4,910	5,789	△880
사무과	1	4	9	12	710	790	△79
곡성읍	1	1	6	-	895	824	71
오곡면	-	-	-	-	572	484	88
삼기면	1	1	3	2	509	452	57
석곡면	-	-	-	-	753	604	149
목사동면	1	1	2	2	500	479	21
죽곡면	1	1	3	2	543	485	58
고달면	-	-	-	-	482	403	80
옥과면	1	1	3	2	670	606	65
입면	1	1	3	2	542	491	51
겸면	1	1	2	2	530	489	41
오산면	1	1	2	2	496	406	90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2.7	61.42	18.73	15.37	64.56	177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이며,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개편 전 자료임.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3	53	-
	부단체장	36	36	-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20	220	-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40	41	1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44	40	△4
	의원국외여비	14	22	8
지방보조금		15,879	7,107	△8,772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917	917	-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인(965천 원)	1인(965천 원)	-
공무원 일·숙직비		1인(50천 원)	1인(50천 원)	-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.go.kr>)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기준재정수요 반영액 (세출 효율화)	기준재정수입 반영액 (세입 확충)
2,946	1,158

- ▶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5. 12. 29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❖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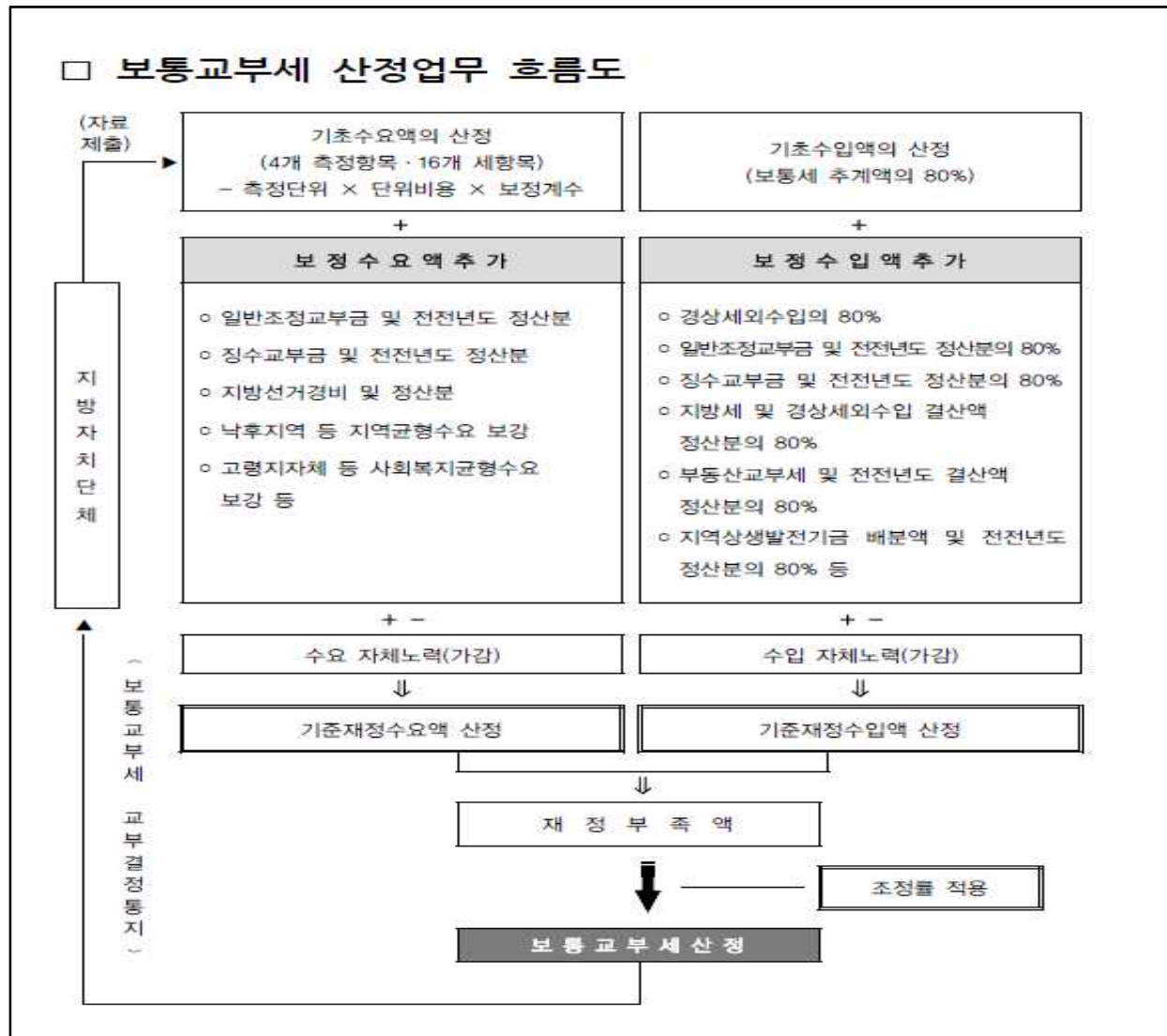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61	2,946
인건비 절감	-	-
지방의회경비 절감	7	8
업무추진비 절감	4	3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-	452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△2,260	916
지방청사 관리·운영	2,310	1,567
읍면동 통합운영	-	-
민간위탁금 절감	-	-

❖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1,915	1,158
지방세 징수율 제고	65	127
지방세 체납액 축소	△132	△128
경상세외수입 확충	2,234	1,424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△96	△134
탄력세율 적용	△155	△131
지방세 감면액 축소	△1	-



4-7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☐ 2015년에 우리 곡성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해당없음		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융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, 위반, 예산편성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

4-8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☐ 2015년에 우리 군은 대중교통 시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증액금액
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	대중교통 시책평가분야 우수기관 선정	100

- ▶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